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을 추가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에 관한 예외적 허용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8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제11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정함.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제13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예외 대상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한 것으로 외국에서 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추가하고, 종전의 개인이 휴대하는 물품 등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예외 대상이 되는 개인의 휴대품이나 가정용품을 각각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개인 수하물에 포함된 것, 이삿짐의 일부로 운송된 것으로 명확히 함.

다.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긴급 보호 조치 및 사육곰 보호 업무 위탁(제39조제1항 개정)

국립생태원에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살아있는 생물의 생존을 위한 긴급 보호 조치, 수출국 또는 원산국으로의 반송·이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 및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 지원 업무를 위탁함

라. 국립공원공단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련 업무 위탁(제39조제2항 신설)

국립공원 일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및 증식·복원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0. 00.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법 제14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를 “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목적으로”로, “받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를 “받은 자가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적정한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서류”를 “서류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증식을 위한 증식 시설의 기준, 증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제2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을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으로, “발급한”을 “발급받은”으로, “가공품”을 “가공품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회원국 정부가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제1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를 “비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이 휴대한 물품(수입·수출 또는 재수출 당시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개인 수하물에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가정용품(수입·수출 또는 재수출 시 이삿짐의 일부로 운송된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

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회원국 정부가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

제3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4조제5항”을 “법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호 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반송·이송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6. 법 제34조의27제1항에 따른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

7. 법 제34조의28제2항에 따른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 지원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 및 증식·복원에 관한 업무(국립공원 일원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증식·복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한다.

제39조의3제5호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14조제5항”을 “법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 다목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위반행위란 라목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위반행위란 마목 중 “법 제14조제5항”을 “법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 다목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위반행위란 라목 중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위반행위란 마목 중 “법 제14

조제5항”을 “법 제14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39조의2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학술 연구의 범위) <u>법 제14조제1항제1호</u>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술 연구”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연구로 한다.		제10조(학술 연구의 범위) <u>법 제14조제2항제1호</u>	-----	
1. 2. (생 략)		-----	-----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① <u>법 제14조제1항제5호</u>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2. (현행과 같음)		
1. <u>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아 수출·반출·가공·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증식한 것</u> 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은 것		제11조(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범위 등) ① <u>법 제14조제2항제5호</u>	-----	
2. 수입·반입한 원산지에서 증식한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인공증식하였음을 증명하는 <u>서류</u> 를 발급받은 것		-----	-----	
		1. <u>법 제14조제2항제1호의 목적으로</u> ----- <u>받은 자가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적정한 방법으로</u> -----		
		2. -----		

		<u>서류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인공 증식의 대상 종(種) 및 방법과 증식시설 등 인공증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신 설>

인공증식증명서-----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공증식을 위한 증식 시설의 기준, 증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

-----.

1. (현행과 같음)
2.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 발급받은 -
----- 가공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

<신 설>

3.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
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 략)

4. (생 략)

5.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
된 악기로서 기후에너지환경
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비상업
적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
품

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회원국 정부가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3. 비상업적 목적으로 개인이
휴대한 물품(수입·수출 또는
재수출 당시 직접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개인 수하물에 포
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가정
용품(수입·수출 또는 재수출
시 이삿짐의 일부로 운송된
것을 말한다)으---. ---.

가.·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
-----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기 인
증서를 발급한 악기

<신 설>

제39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허가

3.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폭발물 사용 등의 허가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포획·채취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보관 신고의 접수

6. ~ 33. (생 략)

③·④ (생 략)

제39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회원국 정부가 악기 인증

서를 발급한 악기

제39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4조제2항-----

3. 법 제14조제4항 -----

4. 법 제14조제5항-----

5. 법 제14조제6항-----

6. ~ 3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업무의 위탁) ① ----

립생태원에 위탁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9조
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호
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반송·이
송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6. 법 제34조의27제1항에 따른
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

7. 법 제34조의28제2항에 따른
곰 사육을 포기한 농가 지원
사업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
물 서식지 보호 및 증식·복원에
관한 업무(국립공원 일원에 멸
종위기 야생생물을 증식·복원하
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국립
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
공단에 위탁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illegible]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4조 제2항-----

6. 법 제14조 제6항-----

7. ~ 2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연 락 처	(044) 201 - 7242